

神奈川県高校生等奨学給付金 (家計急変世帯対象給付・国公立)

授業料以外の教育費を支援する返還不要の給付金(申請必要)

家計急変により保護者全員の年収見込が非課税相当となった世帯が対象

1 申請できる方

次の要件のすべてを満たすことが必要です。

(1) 家計急変による経済的理由により、保護者全員の年収見込が住民税所得割非課税相当になったと認められること。

<住民税所得割非課税に相当する年収見込> 9名扶養以上の場合はお問合せください。

扶養人数	0名扶養	1名扶養	1名扶養 ※ひとり親世帯	2名扶養	3名扶養
①個人事業者	450,000円以下	1,120,000円以下	1,350,000円以下	1,470,000円以下	1,820,000円以下
②給与所得者	1,000,000円未満	1,704,000円未満	2,044,000円未満	2,216,000円未満	2,716,000円未満
扶養人数	4名扶養	5名扶養	6名扶養	7名扶養	8名扶養
①個人事業者	2,170,000円以下	2,520,000円以下	2,870,000円以下	3,220,000円以下	3,570,000円以下
②給与所得者	3,216,000円未満	3,704,000円未満	4,140,000円未満	4,576,000円未満	5,016,000円未満

- 保護者が複数いる場合は、それぞれの保護者について年収見込を確認してください。
- 個人事業者は、家計急変後の年収見込(売上-必要経費)が①に該当すること。
- 給与所得者は、家計急変後の年収見込(通勤手当を除く給与収入)が②に該当すること。
- 保護者全員の令和7年度の住民税の所得割が非課税である世帯、または令和7年7月1日現在、対象となる高校生等が生活保護(生業扶助)を受給している世帯は通常給付でお申込みください。

(2) 保護者の方が認定基準日に神奈川県内に住所を有していること。

- 神奈川県外在住の場合は、お住まいの都道府県へお問合せください。

가나가와현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가계 급변 세대 대상 급부 · 국공립)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금(신청 필요)

가계 급변으로 인해 보호자 전원의 연수입 예상이 비과세가 된 세대

1. 신청할 수 있는 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계 급변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세대 연수입 예상이 “주민세소득할” 비과세 세대에 상당한다고 인정받을 것.

<“주민세소득할” 비과세 세대에 상당하는 연수입 예상> 9명 부양 이상인 경우에는 문의하십시오.

부양자 수	0 명 부양	1 명 부양	1 명 부양 ※한부모 세대	2 명 부양	3 명 부양
①개인 사업자	450,000 엔 이하	1,120,000엔 이하	1,350,000 엔 이하	1,470,000 엔 이하	1,820,000 엔 이하
②급여 소득자	1,000,000 엔 미만	1,704,000엔 미만	2,044,000 엔 미만	2,216,000 엔 미만	2,716,000 엔 미만
부양자 수	4 명 부양	5 명 부양	6 명 부양	7 명 부양	8 명 부양
①개인 사업자	2,170,000 엔 이하	2,520,000 엔 이하	2,870,000 엔 이하	3,220,000 엔 이하	3,570,000 엔 이하
②급여 소득자	3,216,000 엔 미만	3,704,000 엔 미만	4,140,000 엔 미만	4,576,000 엔 미만	5,016,000 엔 미만

- 보호자가 복수(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호자에 대한 연수입 예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 개인 사업자는 가계 급변 후의 연수입 예상(매상고—필요 경비)이 ①에 해당될 것.
- 급여 소득자는 가계 급변 후의 연수입 예상(통근수당을 제외한 급여 수입)이 ②에 해당될 것.
- 보호자 전원의 2025년도 “주민세소득할”이 비과세인 세대, 또는 2025년 7월 1일 현재,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이 생활보호(생업부조)를 수급 받고 있는 세대는 통상급부로 신청하십시오.

(2) 보호자가 인정 기준일에 가나가와현 내에 주소가 있을 것.

- 가나가와현 외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거주하시는 도도부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対象となる高校生等が認定基準日に高等学校等に在籍していること。

- 高校生等とは、就学支援金又は学び直し支援金の受給資格を有する生徒です。
- 高校生等に生活保護(生業扶助)が措置されている場合は支給対象外となります。
- 高校生等が児童福祉施設(母子生活支援施設を除く。)に入所又は里親に養育されており、見学旅行費又は特別育成費が措置されている場合は支給対象外となります。
- 高等学校等とは、高等学校(別科を除く。)、中等教育学校(後期課程)、高等専門学校(第1学年から第3学年まで)、専修学校及び各種学校のうち高等学校の課程に類する課程を置くものをいいます。

◆ 認定基準日

- ・ 令和7年7月1日以前に家計が急変した場合は、令和7年7月1日が認定基準日となります
- ・ 令和7年7月2日以降に家計が急変した場合は、家計が急変した月の翌月(家計が急変した日が月の初日である場合は、家計が急変した月)の1日が認定基準日となります。

2 申請期限 令和7年12月15日(月)

※ 審査がありますので、お早めにご申請下さい。

- 高校生等を複数扶養している場合は、それぞれの高校生等について申請が必要です。

3 支給時期 申請した月の2か月後の末頃を予定 (例)7月申請→9月末頃支給

- 申請が集中した場合は、支給時期が遅くなる場合があります。

4 申請書提出先 認定基準日現在に在学する(していた)学校の事務室

- 神奈川県外の国公立学校に在学の場合は、申請書裏面に学校の証明を受けた後、直接、
神奈川県教育委員会財務課高校奨学金グループ ☎231-8588 横浜市中区日本大通1
☎ 045-210-8251(直通)へ申請してください。

5 支給条件 授業料以外の教育費に係る費用に対して支給します

- 授業料以外の教育費に係る費用に対して支給しますので、この費用に未済がある場合は、
奨学給付金支給額を未済額に充当します。
- ※ 授業料以外の教育費の例:教科書費、教材費、学用品費、通学用品費、校外活動費、生徒会費、PTA会費、入学用品費、修学旅行積立金等
- 授業料以外の教育費に係る費用で未済がないことについて学校長の確認が必要となります。

(3)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이 인정 기준일에 고등학교 등에 재적하고 있을 것.

- 고등학생 등이란 취학지원금 또는 다시배움(学び直し)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입니다.
- 고등학생 등에게 생활보호(생업부조)가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생 등이 아동복지시설(모자생활지원시설은 제외)에 입소해 있거나, 수양부모(里親 사토오야)에게 양육 받고 있어, 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 등이란 고등학교(별과는 제외), 중등교육학교(후기 과정), 고등전문학교(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둔 학교를 말합니다.

◆ 인정 기준일

-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가계가 급변한 경우는, 2025년 7월 1일이 인정 기준일이 됩니다.
- 2025년 7월 2일 이후에 가계가 급변한 경우는, 가계가 급변한 달의 다음 달(가계가 급변한 날이 달의 첫날인 경우는, 가계가 급변한 달)의 1일이 인정 기준일이 됩니다.

2. 신청 기한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 심사가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 등을 복수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고등학생 등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2개월 후의 월말쯤 예정 (예) 7월 신청⇒9월 말쯤 지급

- 신청이 집중된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제출처

인정 기준일 현재 재학하는(재학하고 있던) 학교의 사무실

- 가나가와현 외의 국공립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는, 신청서 뒷면에 학교에서 증명을 받은 후에, 직접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재무과 고등학교장학금 그룹 〒 231-8588 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1 ☎ 045-210-8251(직통)에 신청하십시오.

5. 지급 조건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합니다.

-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학교 납부금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는 장학급부금 지급액을 미납액에 충당합니다.
- ※ 수업료 이외 교육비의 예 : 교과서비, 교재비,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활동비, 학생회비, 학부모(P T A)회비, 입학용품비, 수학여행적립금 등
-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에 소용되는 비용에 미납금이 없다는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支給額

- 世帯区分、在学する学校の課程及び家計急変の発生した日により支給額が異なります
- 「対象者及び給付額確認シート」を参照してください

● 対象となる高校生等1人あたりの給付額(※)

※ 7月2日以降に家計急変した場合は、認定基準日以降の月数に応じた月割額

世帯区分	全日制・定時制	通信制
非課税世帯	143,700円	50,500円

7 提出書類

- (1)~(6)に記載してある書類を提出してください
- 提出前に漏れや必要書類の漏れがない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い
- 不備があると支給が遅くなります

(1) 高校生等奨学給付金(家計急変)受給申請書(第1号様式の2)

(2) 振込先口座を確認できる書類(預貯金通帳のコピー等)

- 振込先口座の金融機関名、支店名、預金種別(普通口座又は貯蓄口座)、口座番号及び口座名義人(カナ)がわかる部分の通帳のコピー等を提出してください。

※ 通帳の表紙の裏に記載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

(3) 保護者等の家計急変の発生事由を証明する書類(①は必須②は一部必須)

- 家計急変理由書(様式A)
- 様式Aの記載内容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以下のとおり、コピー可)

No	家計急変理由	必要書類
1	給与所得者で離職・解雇 (定年退職の場合を除く)	離職票、雇用保険受給資格者証、解雇通知書 のいずれか(必須)
2	個人事業者で事業の廃業	廃業等届出、破産宣告通知書のいずれか(必須)
3	給与所得者で収入減	減額通知書等(会社から交付されている場合のみ)
4	個人事業主で収入減	公的支援の受給証明書(収入減少があった者を対象とした公的支援を受けている場合のみ。 例:持続化給付金や家賃支援給付金等の給付通知書)
5	親権者の離婚・死別等	戸籍全部事項証明書(戸籍謄本)、戸籍個人事項証明書 (戸籍抄本)、離婚届受理証明書のいずれか(必須)

6. 지급액

- 세대 구분, 재학하는 학교의 과정 및 가계 급변 발생일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대상자 및 급부액 확인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 1인당 급부액 (※)

※ 7월 2일 이후에 가계가 급변한 경우는 인정 기준일 이후의 달수에 따른 월 할액(月割額)

세대 구분	전일제·정시제	통신제
비과세 세대	143,700 엔	50,500 엔

7. 제출 서류

- (1)~(6)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제출하기 전에 기입 누락이나 첨부 서류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미비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1)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가계 급변) 수급 신청서 (제1호 양식의 2)

(2)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저금 통장 등의 사본 등)

● 입금계좌의 금융기관명, 지점명, 예금 종류('보통구좌(普通口座)' 또는 '저축구좌(貯蓄口座)'), 계좌번호와 계좌명의인(가타카나)이 명시된 부분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십시오.

※ 통장 표지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호자 등의 가계 급변 발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①은 필수, ②는 일부 필수)

① 가계 급변 이유서 (양식A)

② 양식A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아래와 같음, 사본 가능)

No	가계 급변 이유	필요 서류
1	급여 소득자로 이직·해고 (정년 퇴직인 경우는 제외함)	이직표,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증, 해고통지서 중 어느 하나(<u>필수</u>)
2	개인 사업자로 사업의 폐업	폐업 등 신고, 파산 선고 통지서 중 어느 하나(<u>필수</u>)
3	급여 소득자로 수입 감소	감액 통지서 등(회사에서 교부 받은 경우만)
4	개인 사업자로 수입 감소	공적 지원의 수급 증명서(수입이 감소된 분을 대상으로 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예: 지속화급부금이나 집세지원급부금 등의 급부통지서)
5	친권자의 이혼·사별 등	호적전부사항 증명서(호적등본), 호적개인사항 증명서(호적초본), 이혼 신고 수리 증명서 중 어느 하나(<u>필수</u>)

- (4) **家計急変前の収入を証明する書類(①~③のいずれか)**
- ① 令和7年度 市町村民税・県民税 課税証明書の原本又はコピー
 - ② 令和7年度 市町村民税・県民税 特別徴収税額通知書のコピー
 - ③ 令和7年度 市町村民税・県民税 税額決定・納税通知書のコピー
- ※ 保護者全員分の書類が必要です。

- (5) **家計急変後の収入を証明する書類 (①・②のいずれか)**
- ① 給与所得者で収入減の場合(ア・イのいずれか)
 - ア 勤務先作成の給与見込(給与証明書(様式B)又は勤務先の様式)

※ 賞与の支給の有無と令和7年の賞与支給見込も記載してください。
 - イ 給与明細の写し + 令和7年分の賞与支給(見込)申出書(様式C)

※ 支給済の賞与がある場合は賞与明細の写しも添付してください。
 - ② 個人事業者で収入減の場合(ア・イのいずれか)
 - ア 税理士又は公認会計士の作成した証明書類
 - イ 収入申告書(様式D)

※ 必要経費内訳のわかるものの写しを添付してください。

- ※ ①・②は、離婚後の親権者が給与所得者、個人事業主の場合も含みます。
- ※ 家計が急変した後の連続した3か月分(申請時点で事由が発生してから4か月以上経過している場合、申請月の前3か月分)の証明が必要です。
- (例1) 家計が急変した月: 5月 ⇒ 5月分~7月分
- (例2) 家計が急変した月: 11月 ⇒ 11月分~1月分
- 収入証明書類が12月15日以降にしか用意できない場合は、用意でき次第ご提出いただきます。
- ※ 離職・解雇・廃業・離婚・死別により家計急変後の収入がない場合、その旨を様式Aの申立欄に記載してください。
- ※ 令和7年度の住民税所得割が非課税である保護者の収入証明書類は提出不要です。

- (6) **保護者等の扶養親族の人数・年齢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 (①・②必須)**
- ① 扶養誓約書(様式E)

※ 扶養者1名ごとに1枚作成してください。

(例) 4人世帯で父が第1子を扶養、母が第2子を扶養している場合
⇒ 父で1枚、母で1枚
 - ② 様式Eの記載内容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 (ア~イのいずれか)
 - ア 扶養親族の記載が省略されていない課税証明書(コピー可)

※ (4)で提出した書類で確認できる場合は、重複して提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 イ 令和6年分の源泉徴収票のコピー

(4) 가계 급변 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

- ① 2025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과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② 2025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특별징수세액 통지서의 사본
 - ③ 2025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통지서의 사본
- ※ 보호자 전원 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가계 급변 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①② 중 어느 하나)

- ① 급여 소득자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ㄱ·ㄴ 중 어느 하나)

- ㄱ. 근무처가 작성한 급여 예상(급여 증명서(양식 B) 또는 근무처의 양식)

※ 상여 지급의 유무와 2025년의 상여 지급 예상도 기재하십시오.

- ㄴ. 급여 명세의 사본 + 2025년 분의 상여 지급(예상)신고서(양식 C)

※ 이미 지급된 상여가 있는 경우는 상여 명세 사본도 첨부하십시오.

- ② 개인 사업자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ㄱ·ㄴ 중 어느 하나)

- ㄱ. 세리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증명서류

- ㄴ. 수입신고서 (양식 D)

※ 필요 경비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① · ②는 이혼 후의 친권자가 급여 소득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 가계가 급변한 후 연속된 3개월분(신청 시점에서 사유가 발생한 지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신청월 전 3개월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 1) 가계가 급변한 달 : 5월 ⇒ 5월분~7월분

(예 2) 가계가 급변한 달 : 11월 ⇒ 11월분~1월분

수입 증명 서류를 12월 15일 이후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경우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직·해고·폐업·이혼·사별로 인해 가계 급변 후 수입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양식 A의 신청란(申立欄)에 기재하십시오.

※ 2025년도의 “주민세소득할”이 비과세인 보호자의 수입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보호자 등의 부양 친족의 인원수·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①②필수)

① 부양 서약서 (양식 E)

※ 부양자 1명마다 1장을 작성하십시오.

(예) 4인 가족(세대)으로 아버지가 제1자를 부양, 어머니가 제2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아버지로 1장, 어머니로 1장

② 양식 E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ㄱ~ㄴ 중 어느 하나)

ㄱ. 부양 친족 기재가 생략되지 않은 과세증명서 (사본 가능)

※ (4)에서 제출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ㄴ. 2024년분의 원천징수표 사본

こうこうせいとうしようがくきゅうふきんかけいきゅうへんせたいたいしようきゅうふ
高校生等奨学給付金(家計急変世帯対象給付) 対象者及び給付額確認シート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가계 급변 세대 대상) 대상자 및 급부액 확인 시트

Q 1. にんていきじゅんびげんざい ほごしやかた かながわけんないす
認定基準日現在、保護者の方は神奈川県内にお住まいですか？

인정 기준일 현재, 보호자는 가나가와현 내에 살고 있습니까?

네→Q 2, 아니요→A1



Q 2. にんていきじゅんびげんざい こうこうせいとうがつこうざいせき
認定基準日現在、高校生等は学校に在籍していますか？

인정 기준일 현재, 고등학생 등은 학교에 재적하고 있습니까?

네→Q 3, 아니요→A2



Q 3. にんていきじゅんびげんざい こうこうせいとうせいかつほごせいぎょうふじよ
認定基準日現在、高校生等は生活保護(生業扶助)を受けていますか？

인정 기준일 현재, 고등학생 등은 생활보호(생업부조)를 받고 있습니까?

네→A3, 아니요→Q 4



Q 4. ほごしやせんいんれいわねんどとどうふけんみんせいしょとくわりがくしちょうそんみんせいしょとくわりがくがつさんがくえん
保護者全員の令和7年度の都道府県民税所得割額と市町村民税所得割額の合算額は0円
(非課税)ですか？

보호자 전원의 2025년도 “도도부현민세소득할액”과 “시정촌민세소득할액”의 합산액이
0엔(비과세)입니까?

네→A3, 아니요→Q 5



Q 5. かけいきゅうへんほごしやせんいんねんしゅうみこみひかぜいそうとう
家計急変により保護者全員の年収見込が非課税相当となりましたか？

가계 급변으로 보호자 전원의 연수입 예상이 비과세에 상당합니까?

네→A4, 아니요→A2

A1. 都道府県ごとに制度が異なりますので、お住まいの都道府県にお問合せください。

도도부현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도도부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2. 該当しません。

해당하지 않습니다.

A3. 家計急変世帯に該当しませんが、通常給付の申請が可能※です。

※生活保護世帯は、令和7年7月1日現在、生活保護（生業扶助）を受けている場合に
かぎ
限ります。

가계 급변 세대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상급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보호 세대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생활보호(생업부조)를 받고 있는 세대에 한합니다.

A4. 高校生等が認定基準日時点では在籍している課程に応じて、給付額が異なります。

고등학생등이 인정 기준일 시점에서 재적한 과정에 따라 급부액이 다릅니다.

(国公立)

- ・全日制：143,700円
- ・定時制：143,700円
- ・通信制： 50,500円

(국공립)

- ・전일제 : 143,700엔
- ・정시제 : 143,700엔
- ・통신제 : 50,500엔

(私立)

- ・全日制：152,000円
- ・定時制：152,000円
- ・通信制： 52,100円

(사립)

- ・전일제 : 152,000엔
- ・정시제 : 152,000엔
- ・통신제 : 52,100엔

◆上記の単価は年額の例です。7月2日以降に家計急変した場合は、認定基準日以降の月数に応じた
月割額となりますので上記の単価とは異なります。

◆상기 단가는 연액의 예입니다. 7월 2일 이후에 가계가 급변한 경우는, 인정 기준일 이후의
달수에 따른 월할액(月割額)이 되므로 상기 단가와 다릅니다.